

[별표 1]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(제3조 관련)

	인증 항목	구분	배점	일반 주택 <sup>1)</sup>	공동 주택 <sup>2)</sup>
7. 실내환경	7.1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	필수항목	6	●	●
	7.2 자연 환기성능 확보	평가항목	2	●	●
	7.3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	평가항목	2	●	●
	7.4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	평가항목	1	●	●
	7.5 경량충격음 차단성능	평가항목	2	●	●
	7.6 중량충격음 차단성능	평가항목	2	●	●
	7.7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	평가항목	2	●	●
	7.8 교통소음(도로, 철도)에 대한 실내·외 소음도	평가항목	2	●	●
	7.9 화장실 급배수 소음	평가항목	2	●	●

- 1)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과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.
- 2) 공동주택은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의 주택을 말한다.
- 3) '8.주택성능분야(17개 항목)'은 녹색건축인증 평가시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[별지 제1호서식]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만 표시하고 인증평가를 위한 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.
- 4) 녹색건축인증전문가는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.
- 5)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 인증항목은 최우수 및 우수 등급으로 신청하는 건축물만 평가한다.
- 6) 녹색건축 계획·설계 심의는 인증심의회위원회 4인 이상과 설계분야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녹색건축 계획·설계 심의단을 통해 평가한다.